

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5일
신고인	대표자	영업소명		
	등록번호			
등록사항	변경 전	변경 후		

변경사유

분실사유

「식품위생법」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1.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지정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2.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제3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처리 절차

